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49

발의연월일: 2020. 11. 13.

발 의 자:김상훈·태영호·김희국

윤두현 · 양금희 · 한무경

강기윤 · 조수진 · 박대출

이종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2020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8년 기준 16.7%로, 2011년 기준 18.6%에 비해 크게 개선 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빈곤율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 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 하기 위하여 계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	과세특례)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직	
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	
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	
천만원을 초과한 자를 제외한	
다)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	
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	
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	
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	
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	
(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	
축"이라 한다)에 <u>2020년 12월 31</u>	<u>2023년 12월 31</u>
<u>일</u> 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	<u>일</u>
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